

설명회 질의응답

구분	질의 내용	답변
1	24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학교가 점검 후 25년 3월부로 학생들이 없어 휴교 및 폐교 대상이 되었다면 개선조치를 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교 및 폐교 대상으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안해도 될까요? 대상시설은 학생들이 사용을 안하는 곳이라고 함.	대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2	어린이 활동공간 시정명령 미준수시 업무요령	환경보건법 제31조 벌칙조항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하므로 이에 업무 진행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는 사후 관리에만 중점을 둔 제도인 것 같음. 사후 관리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제안.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고 어린이활동공간에 그런 제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됨. 관리자에게 점검 및 개선 권고가 아닌 어린이 활동공간 내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만 시공 등 법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오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부적합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관리자는 검사비와 개선비 등 소요 예산 증가하는 추세. 사후 관리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법을 강화할 계획 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사업자, 개인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그에 따른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음. 이것을 하나로 풀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에 따라 고민하고 있음.
4	환경부에서 점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시는 것으로 보임. 개선을 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 사업 계획 여부.	이미 법정 의무 시설인데 국고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에 따른 내용은 예산 당국에서 회의적인 입장. 법정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의무가 있는 시설까지 국고 투입은 어려움. 법정 의무 시설 외에 자발적으로 개선 유도가 필요한 시설에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5	지도점검 측정 지원 무료 및 유료 여부. 무료라면 지원 가능 개소 수, 유료의 경우 가격 문의.	지도점검 지원은 매년 전체 목표 수를 정해놓고 해당 지역에서 3년 동안 지도점검 실적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의 수를 고려하여 배분. 그 자료를 토대로 사군구에 배정하게 되며 환경부 예산으로 무료로 진행

구분	질의 내용	답변
6	1차 기본조사 후 정밀조사를 KCL에 의뢰 가능 여부 및 비용 발생 여부.	환경부에서 지원한 지도점검 이후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다음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비용 발생하며 법정 수수료를 받은 후 진행하며 시설에서 지불함. 그 외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시청에서 수수료 지불 후 관할에 있는 해당 시설 지도 점검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음.
7	지도점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 문의.	환경보건법에 따라 벌금을 주체하는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도의 교육감
8	매뉴얼에는 고발 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학교장을 고발조치 하는게 맞는지 문의.	장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9	환경보건관리시스템에 개선조치등록 시 공문을 통한 학교 미 안내 가능 여부 및 시스템에 파일 등록시 공문을 통한 미 안내 가능 여부.	환경보건관리시스템에 학교는 접근 권한이 없음.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학교로 공문 발송해야 함. 환경보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본문 작성 시 붙임 자료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함.
10	제2호 가목 도료 및 마감재의 부적합으로 개선명령 시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친환경인증제품으로 수선, 개선으로 안내함. 위 경우 친환경인증제품 구매내역서, 제품 사진, 시공 전중후 사진으로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미확인 가능 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제2호 가목 도료로 마감재의 부적합 개선조치 이행을 했다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필요 없음. 다만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는 유념해 봐야 함
11	실내공기질 부적합의 경우 검사기관에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하는지 문의.	실내공기질 부적합 사유는 비용을 내고 해당 기준을 준수 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함
12	기본검사 부적합 시 정밀검사 생략 후 개선명령 가능 여부.	정밀검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항목인데, 기본 검사만 부적합이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건 사실상 맞지 않음. 정밀검사까지 진행 후 개선명령을 내려야 함.
13	검사기관별로 확인 검사 알림 시기와 방법 상이. 일부 기관에서 한달치 확인 검사 건을 묶어서 한참 지나서 알림 공문이 올 경우 부적합 시설에 대한 빠른 대응 불가.	확인 검사 결과의 경우 법적으로 처리 기간 20일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스템상으로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시험기관에 공지하겠음.

구분	질의 내용	답변
14	6호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기기가 없을 경우 지자체 자체 지도점검 진행 방법.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15	위반 항목이 많이 나온 학교 중 수선 공사 예정인 학교가 있을 경우 3개월 유예 가능 여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3개월 이내 개선 권고 명령을 내려야 함. 3개월 이내 조치를 해야하고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총 6개월 이내 개선 조치하여야함.
16	지도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검사 당시는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학부모 상담실로 사용해서 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닐시 개선 완료 확인 여부.	현재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하는게 맞을 것이나 개선 완료로 보기보단 해당 없음으로 처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17	중금속간이측정기가 구비되지 못한 기초단체가 대부분이며, 원자력 안전 관리법상 타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여 후 사용하기 어려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운영상 점검 지원 원활하지 않음. 관련하여 환경부 예산 지원 가능 여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18	학교내에 있는 놀이 시설은 학교 교실로 봐도 될지에 대한 문의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제외되는 상담실의 경우에는 책걸상 하나 정도만 들어가서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규모실이며 일반 교실 규모로 운영되며 아이들 학습이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실과 같은 교실로 보고 검사 진행 하고 있음.
19	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오픈된 공간에 있는데 실내 공기질도 지도점검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문의	천장 및 사면이 분리되고 개폐가 가능한 경우 실내 개폐 불가하거나 상시, 개방되어 있는 경우 실외로 보고 있으므로 학교 복도 등의 경우에는 학교, 건물 내부에 있으며 출입문이 상시 개방이 아니므로 실내로 보고 실내공기질 검사도 진행하고 있음.
20	위클래스도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되는데 위클래스를 보건실 처럼 관리실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위클래스의 어린이 활동공간 포함 여부 문의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제외되는 상담실의 경우에는 책걸상 하나정도만 들어가서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규모실이며 일반 교실 규모로 운영되며 아이들 학습이나 활동들이 이루어 지는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실과 같은 교실로 보고 검사진행 하고 있음.

구분	질의 내용	답변
21	자체 지도점검을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결과 입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요청	시스템에는 현행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도점검 결과만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 지도점검은 입력하지 않아도 됨 (결과를 따로 보관하신 후, 추후 개정기준 검사 결과 필요 시 업로드 하면 될것으로 판단 됨)
22	2023년도에는 지도점검 부적합사항 결과가 공문으로 통보 되어왔을시 올해의 경우 시스템으로 부적합시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진행 여부 문의	금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문발송을 대신하여 시스템에 점검현황 및 결과가 업데이트 됨.
23	공문이 안오면 결과 관련 공문을 지도점검 계획이나 시행 안내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공문에 첨부되어 발송되던 결과는 환경보건관리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고 부적합시설에 관련된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함.
24	휴·폐교예정인 있는 부적합시설의 경우 개선이행기간을 연장하여 6개월까지 기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휴·폐교 결정이 안되면 개선조치 여부 문의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으로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어린이들은 문제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5	부적합 개선조치시 문제가 된 마감재를 모두 제거후 재시공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덧바르기만 해도 개선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창틀 같은 경우 도료를 긁어내고 덧바르면 공사가 큰 경우가 있음	기본적으로 부적합 자재는 제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 너무 클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로 덧바르거나 씌우고 해당자재를 사용한 증빙자료(환경보건 업무매뉴얼 참조)와 시공한 자재 샘플을 보관해두시면 개선이행 자료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추후 지도점검시에 증빙서류 및 보관해둔 샘플을 확인하여 면제대상으로 하실 수 있음
26	신규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는 시설들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신규활동공간으로 지정예정인 체육관은 교육청,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가 관리주체임